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29)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2

Ⅰ.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62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0.

(3) 회 부 일 : 2025. 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현행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이수진의원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 머목)	□ 자녀 보육 급여 한도 상향 등 (제12조제3호 머목)	□ 자녀 보육 급여 한도 상향 (제12조제3호머목)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한도: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한도: 월 30만원) 월 30만원의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윤준병의원안)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30만원의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윤준병의원안) 월 30만원 이내 금액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40만원) (이수진의원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제외 ※'24년 세법개정으로 동 조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현행과 같음)

현행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이수진의원안
항 신설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2025.1.1.	○ 시행일: 이 법 공포후 3개월(윤준병의원안) 이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수진의원안)

* 전재수의원안 2024. 11. 1. 제출(의안번호 5173), 윤준병의원안 2024. 12. 31. 제출(의안번호 7140), 이수진의원안 2025. 1. 20. 제출(의안번호 7629)

□ 3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전재수의원안은 30만원으로, 윤준병의원안은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수진의원안은 이를 30만원으로 상향하되 자녀의 수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하며,

전재수의원안의 경우 자녀보육비 및 출산지원금에 대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10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유지되다가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은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1]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2]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최근 반등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영유아 가구[3]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97만 6천원, 2018년 월 86만 9천원에서 10만 7천원이 증가(12.3%)[4]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 양육비용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과세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5]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비과세소득 확대로 인하여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현 상황[6]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됨.[7]

---

3)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4)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12.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5) 저소득 면세자는 2021년 35.3%로 조사됨.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6) 2021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28.6% 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6.1% 인 반면, OECD 평균은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32.4% 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8.3%임. (자료: 기획재정부)

7)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액 계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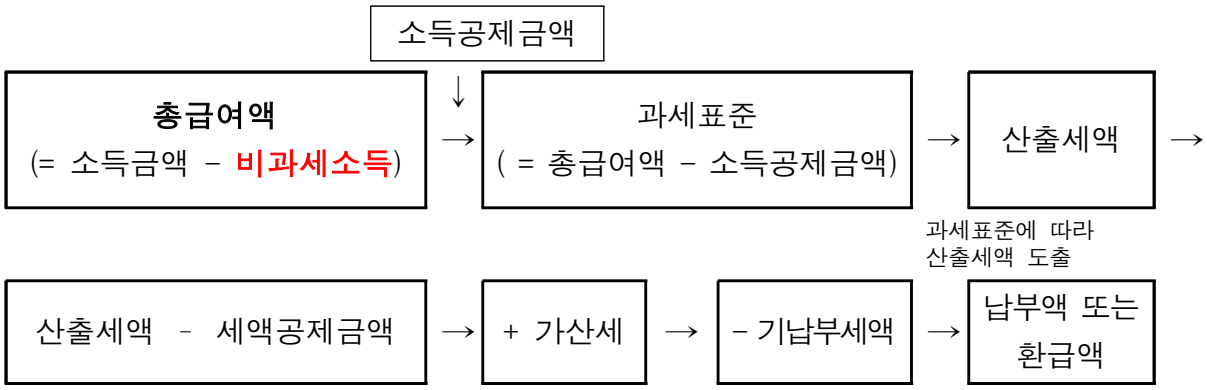

이로 인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8], 건강보험[9],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10])의 감면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11]

셋째,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2003년 보육비용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10만원으로 설정 된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2025년은 2003년 대비 약 1.6배의 물가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그 한도가 2배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

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 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11) 참고로 2022년 11월 진선미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10만원 인상(식사대 비과세 한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상향조정된 비과세 한도가 물가수준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한편, 전재수의원안은 현행 규정과 달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일영 의원안(의안번호 2200362) 및 윤호중의원안(의안번호 22003508)에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